가정상담

2023 07
통권 479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LETTER • ISSN1227-7568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6월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초청으로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찰의 다양한 정책과 상담소의 역할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관련기사 33면)

▶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본소의 화상상담이 일주년을 맞아 순항하고 있다. 화상상담은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할 수 있어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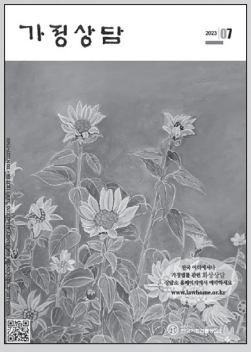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11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7주년 심포지엄 ②
22 • 특별기획 |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⑦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㊶
26 • 가정폭력상담실
29 • 어떻게 할까요
32 • 좋은 책
감염병을 바라보는 의료인문학의 시선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5 •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23. 7.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 표지글씨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 표지그림 **이현혜** 평생회원 〈송현공원 해바라기〉

이 달의 메시지

화상상담 일 년을 돌아보며 -

상담소는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8월 27일(월) 상담 제1일이다. 9시부터 기다리던 여인이 제1호로 접수되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은 모두 일곱 명이었으나 여섯 건밖에 접수하지 못했다."

1956년 8월 25일 개소식을 하고 8월 27일 첫 상담을 시작한 상담소 첫 날의 일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보내고 있는 상담소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 발전과 더불어 상담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가정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번민하는 이웃들이 더 쉽게 상담소와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창구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통의 기본은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어 가는 것에 있기에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특히 남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이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는 상담소의 특성상 상담소는 모든 이들에게 우선 면접상담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얼굴을 맞대고 자신이 처한 문제를 드러내 이야기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상담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늘어 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

로 제때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상담소는 그때그때 마다 가능한 한 상담을 원하는 많은 사람이 지체없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 왔습니다.

1972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매주 월요일 저녁에 열리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부터는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서울 외곽지역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이동 순회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출장상담으로 발전하여 비혼모 시설이나 노숙자자활센터 등에서 실시되는 상담과 법 교육으로 발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신상담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지상상담은 물론 전화상담과 상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상담까지 상담소는 사회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모든 창구를 열어 상담소를 찾는 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1년 3월부터는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출장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지난해 시작한 화상상담이 일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담소도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서울가정법원의 재판 연기와 휴정에 맞추어 시작된 출장상담의 임시 중지 그리고 관할구청의 권고에 따른 면접상담의 임시 중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교육부와 가정폭력상담실의 많은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심포지엄 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상담소는 이렇듯 역사상 처음 맞는 비상사태 속에서도 바쁜 일상의 업무 속에 미루어두었던 일들을 차분히 진행하며 그 시간을 지나왔고, 상담의 다른 길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흐름처럼 온라인의 세상에도 본격적으로 상담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컴퓨터 장비를 새로 보완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상담위원이 처하게 될지도 모를 여러 가지 위험과 낯선 경험에 대한 두려움들을 딛고 2022년 화상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추가하는 절차 등을 보완해가며 상담을 시작한 결과 이제 화상상담 또한 상담소의 주요한 상담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담위원과 만납니다.

예측한 것처럼 대체로 3, 40대 젊은 층이 많고, 거리상 제약이 없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건상 남녀 모두 회사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렇듯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다양한 가정문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 면접상담처럼 부부갈등이나 이혼 상담이 많지만, 상속과 유언 관련 문의가 두드러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몇 차례 후속 상담이 이어지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화상상담을 통해 면접상담과 소송구조까지 연계되기도 하니 화상상담이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혼자 있기 편한 곳을 찾아 자동차 안에서 상담을 하거나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해 운전 중 상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가정에서 접속할 경우 인터넷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옆에서 돕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함께 상담소를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넷,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넓게 확산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적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과 가족의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상담소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떠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상담소는 상담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들 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기 때문입니다.

특집 ❶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상담통계 -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찾는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으로 호응
유언과 상속에 관한 상담 가장 많아

2022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5,781건 상담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고 50~60대 민원인 많아

소장 · 답변서 · 보정서 작성 등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해

상담 내용은 유언 • 상속, 이혼, 성년후견 순으로 많아

2011년 출장 상담 시작 후 2022년까지
12여 년간 총 86,041건 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2011년 3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출장상담실이 신설되었다.

총 2개소의 상담실에서 본 상담소 상담위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순번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2011년 3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총 86,04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시작 첫해인 2011년에는 상담건수가 2,454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2,830건, 2013년에는 5,782건, 2014년에는 5,995건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민원인들의 상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상담실을 추가로 오픈한 2015년에는 11,379건으로 더욱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1,643건, 2017년에는 8,944건, 2018년에는 8,891건, 2019년에는 9,006건, 2020년에는 6,508건, 2021년에는 6,828건, 2022년에는 5,781건의 상담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상담소에서는 여전히 연간 5천 건 이상 법률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연도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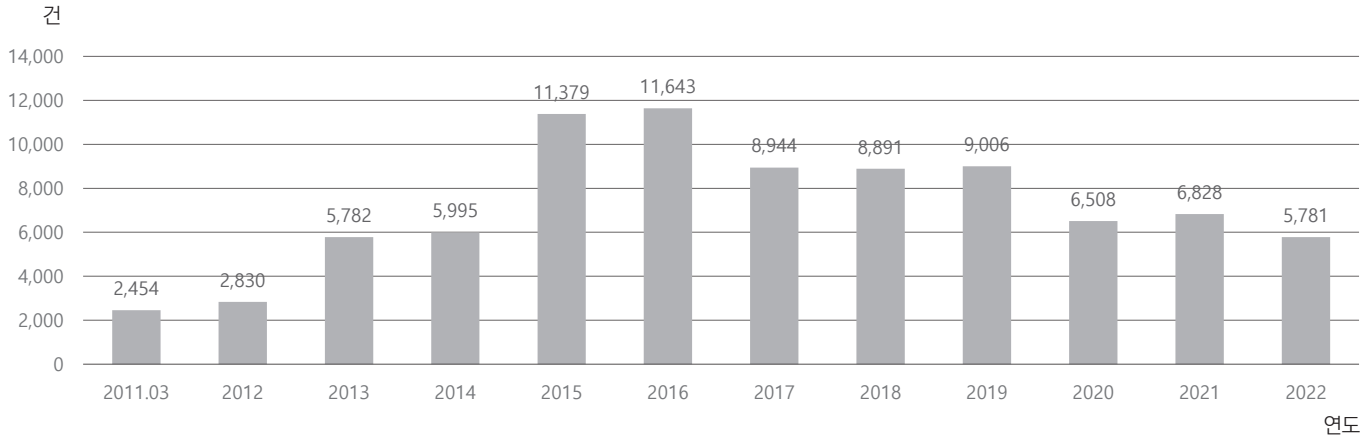

〈 연도별 상담건수 분석표 〉

연도	총건수	월평균
2011/3	2,454	273
2012	2,830	236
2013	5,782	482
2014	5,995	500
2015	11,379	948
2016	11,643	970
2017	8,944	745
2018	8,891	741
2019	9,006	751
2020	6,508	542
2021	6,828	569
2022	5,781	482
합계	86,041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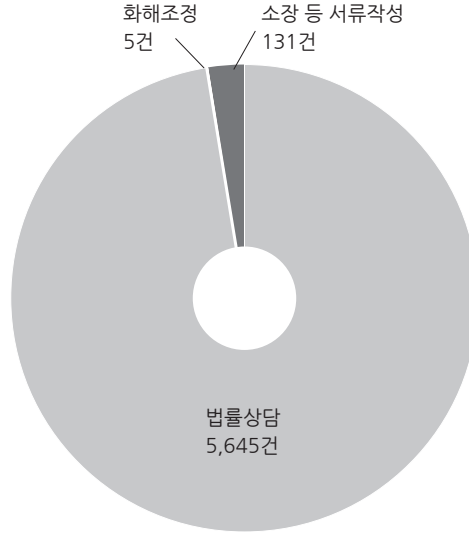

2. 사건처리별

소장, 답변서, 보정서, 신청서 작성 등
민원인들에게 좀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 제공해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상담을 처리방법별로 살펴보면, 총 5,781건 중 법률상담은 5,645건(97.6%)이었다. 한편,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를 하여 부부문제나 가족문제의 당사자들이 대화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 화해조정은 5건(0.1%)이었다.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민원인들에게 소장, 답변서, 보정서, 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한 경우도 131건(2.3%)에 달했다.

한편, 2022년 한 해 동안 여의도에 위치한 본 상담소 전체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61,562건이었고, 그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518건으로 0.8%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진행한 상담 건 중 '소장 등 서류작성'으로 처리된 건은 총 5,781건 중 131건으로 2.3%를 차지해 법원 상담의 경우 소송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서류 접수를 앞둔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도움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구조를 안내해 본 상담소에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도록 처리하였다.

〈 처리방법별 분석표 〉

처리방법	총건수	%
법률상담	5,645	97.6
화해조정	5	0.1
소장 등 서류작성	131	2.3
합계	5,781	100.0

3. 내담자 특성별

1) 남녀별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아

여 성	3,196 명	(55.3%)
남 성	2,585 명	(44.7%)
합 계	5,781 명	(100.0%)

내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3,196명(55.3), 남성이 2,585명(44.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았다.

2) 연령별

여성은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남성은 50대, 60대, 40대 순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60대가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23.1%), 40대(19.7%), 70대(12.9%),

〈연령별 분석표〉

성별 / 연령	여 성		남 성		합 계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15	0.5	20	0.8	35	0.6
20대	112	3.5	86	3.3	198	3.4
30대	368	11.5	263	10.2	631	10.9
40대	630	19.7	422	16.3	1,052	18.2
50대	739	23.1	645	25.0	1,384	23.9
60대	824	25.8	634	24.5	1,458	25.2
70대	412	12.9	382	14.8	794	13.7
80대 이상	94	2.9	129	5.0	223	3.9
미상	2	0.1	4	0.2	6	0.1
합 계	3,196	100	2,585	100	5,781	100

〈 사건내용별 분석표 〉

사건내용 \ 성별		여성		남성		합계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사건수(명)	백분율(%)
가사 6,696건 (98.1%)	남녀관계	-	-	-	-	-	-
	파혼	-	-	2	0.1	2	0.0
	부부갈등	15	0.5	6	0.2	21	0.4
	이혼	612	19.1	465	18.0	1,077	18.6
	사실혼해소	5	0.2	6	0.2	11	0.2
	위자료·재산분할	126	3.9	65	2.5	191	3.3
	친권·양육권	69	2.2	50	1.9	119	2.1
	양육비	120	3.8	45	1.7	165	2.9
	면접교섭권	23	0.7	34	1.3	57	1.0
	인지	19	0.6	9	0.3	28	0.5
	친생부인	27	0.8	18	0.7	45	0.8
	친생자관계존부	122	3.8	107	4.1	229	4.0
	입양	31	1.0	62	2.4	93	1.6
	파양	14	0.4	9	0.3	23	0.4
	친양자	10	0.3	24	0.9	34	0.6
	혼인무효·취소	5	0.2	16	0.6	21	0.4
	이혼무효·취소	4	0.1	2	0.1	6	0.1
	부양관계	15	0.5	19	0.7	34	0.6
	유언·상속	691	21.6	621	24.0	1,312	22.7
	가족관계등록부	218	6.8	214	8.3	432	7.5
	개명	94	2.9	48	1.9	142	2.5
	성변경	85	2.7	31	1.2	116	2.0
	미성년후견	23	0.7	4	0.2	27	0.5
	성년후견	352	11.0	287	11.1	639	11.1
	가사절차	212	6.6	194	7.5	406	7.0
	기타	193	6.0	192	7.4	385	6.7
민사 90건 (1.3%)	임대차	1	0.0	2	0.1	3	0.1
	부동산	11	0.3	4	0.2	15	0.3
	채권·채무	27	0.8	16	0.6	43	0.7
	파산	8	0.3	2	0.1	10	0.2
	개인회생	1	0.0	1	0.0	2	0.0
	민사절차	11	0.3	9	0.3	20	0.3
	민사기타	21	0.7	10	0.4	31	0.5
형사 42건 (0.6%)	혼인빙자간음	-	-	-	-	-	-
	간통	-	-	-	-	-	-
	성폭행	1	0.0	-	-	1	0.0
	성매매	-	-	-	-	-	-
	형사절차	8	0.3	7	0.3	15	0.3
	형사기타	22	0.7	4	0.2	26	0.4
합계		3,196	100	2,585	100	5,7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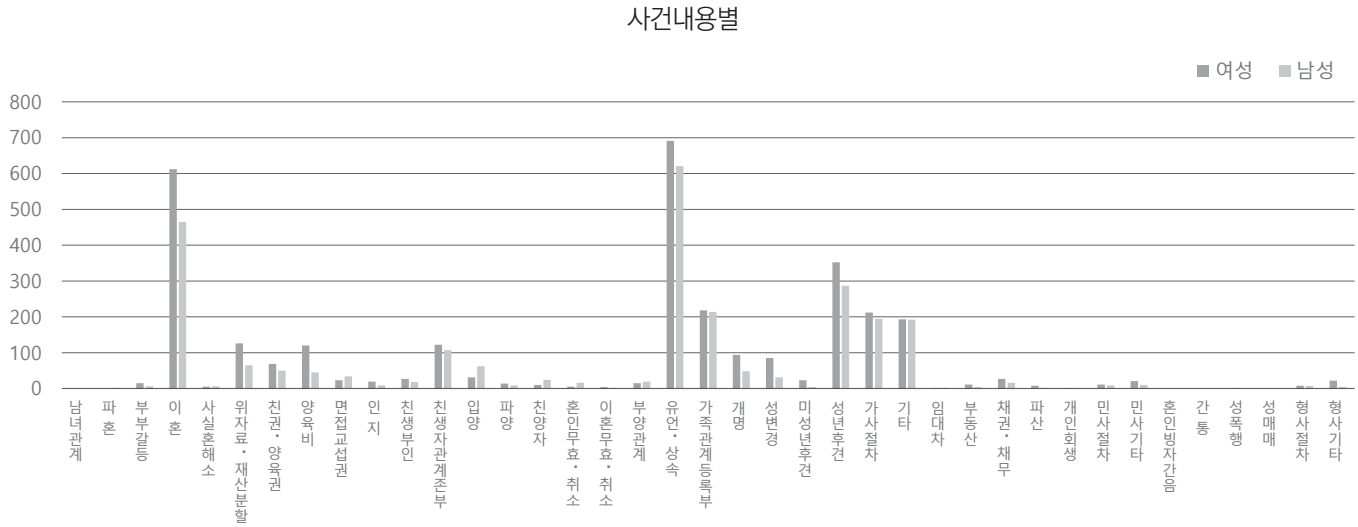

30대(11.5%), 20대(3.5%), 80대 이상(2.9%), 10대(0.5%)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가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24.5%), 40대(16.3%), 70대(14.8%), 30대(10.2%), 80대 이상(5.0%), 20대(3.3%), 10대(0.8%)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4. 사건내용별

유언 • 상속, 이혼, 성년후견 순으로 상담 많아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항목은 유언 · 상속으로 총 5,781건 중 1,312건(22.7%)에 달했다. 다음은 이혼(1,077건, 18.6%), 성년후견(639건, 11.1%), 가족관계등록부(432건, 7.5%), 가사절차(406건, 7.0%), 가사기타(385건, 6.7%), 친생자관계존부(229건, 4.0%), 위자료 · 재산분할(191건, 3.3%), 양육비(165건, 2.9%), 개명(142건, 2.5%), 친권 · 양육권(119건, 2.1%), 성변경(116건, 2.0%), 입양(93건, 1.6%), 면접교섭권(57건, 1.0%), 친생부인(45건, 0.8%) 순이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은 총 3,196건 중 유언 · 상속이 69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혼(612건, 19.1%), 성년후견(352건, 11.0%), 가족관계등록부(218건, 6.8%), 가사절차(212건, 6.6%), 가사기타(193건, 6.0%), 위자료 · 재산분할(126건, 3.9%), 친생자관계존부(122건, 3.8%), 양육비(120건, 3.8%), 개명(94건, 2.9%), 성변경(85건, 2.7%), 친권 · 양육권(69건, 2.2%), 입양(31건, 1.0%), 친생부인 · 채권/채무(각 27건, 각 0.8%) 순이었다.

남성은 총 2,585건 중 유언 · 상속이 621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혼(465건, 18.0%), 성년후견(287건, 11.1%), 가족관계등록부(214건, 8.3%), 가사절차(194건, 7.5%). 가사기타(192건, 7.4%), 친생자관계존부(107건, 4.1%), 위자료 · 재산분할(65건, 2.5%), 입양(62건, 2.4%), 친권 · 양육권(50건, 1.9%), 개명(48건, 1.9%), 양육비(45건, 1.7%), 면접교섭권(34건, 1.3%), 성변경(31건, 1.2%), 친생부인(18건, 0.7%) 순이었다.

김진영 상담위원

특집 ❷

창립 67주년 및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정방향 (2)

토론문

우 종 인

한국치매협회 회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후견이란 쉽게 말해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에 맞게 해주면 좋다는 것, 객관적 단계(objective level)가 아닌 주관 단계(subjective level)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객관 단계에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후견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후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보통 발달장애, 치매, 망상, 정신분열증 등을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다.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의사결정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정일 수도 있고 찰나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섞여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는 것, 장애로 인해 손상을 받고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기능·능력을 지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과연 그 사람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 자체와 장애 둘 다 고려해야 하는데, 사람을 잘 안 보니까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장애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잔존능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실, 인간은 사는 동안 의사결정을 매 순간 하

* 일찍부터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종전 금치산제도의 대안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제도의 도입 이후에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본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창립 67주년 및 가정의 달 기념으로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른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 실현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 〈가정상담〉 6월호에 주제발표를 실은 데 이어 이번 호에는 토론문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고 있다. 의사결정으로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의사결정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로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복리(wellness) 혹은 희망을 보고 아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피후견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할 것인가? 의사결정능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요소들에 있어서 건강, 뇌, 돈도 중요하고 가족과 사회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으며, 여태 쌓아온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다. 또한 처음부터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어 태어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다 배양이 되어 훌륭히 의사결정능력 행사하다가 의사결정능력이 손상이 된 사람도 있고, 그 손상된 정도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지원할 때 각 사람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희망, 복리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지원하려면 일단 잘 알아야 하는데, 소통이 쉽지 않다.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주관 단계의 소통이며, 결국은 그 사람의 것이 나에게 와 닿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볼 수 있으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온전하게 와 닿는 것조차도 어렵다. 하물며, 인지장애로 인해 소통이 애초에 잘 안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려니 더 어렵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 제도, 매뉴얼, 약속 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의사결정능력 지원하려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지원하면 되고, 가족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지원하는 것인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독거노인 혹은 치매 독거노인이다. 알아야 지원하는데 가족도 없고, 소통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시에 건의하여 임의후견한 지 6년 됐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적인 사람 100여 명을 하고 있어도 쉽지 않다.

대체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에 관여하는 요소 중 '사회'를 언급했듯이, 사회의 영향도 크다. 우리나라 문화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서구적인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 문화를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이미 후견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었던 일본에 가보았다. 일본은 지역마다 후견제도의 모습이 다르다. 도쿄의 경우, 후견 사무를 모두 다르게 펼치고 있었고, 고베의 경우, 정신과 의사가 시 소속 과장이었는데 본인이 전문가로서 공무원이 되어 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후쿠오카의 경우,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후견은 혼자 못한다는 것, 팀으로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시청에 부서가 있어서 공무원,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문

배 인 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니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토론자는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대법원 산하 연구반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의미에 대해 학생처럼 배우고 대법원 규칙의 제정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데 성

년후견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들도 제법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성년후견과 행위능력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물론 민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938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평가하여 일부 범위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의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철 부장판사가 2023. 3. 6. 법률신문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사전에 성년후견인의 취소권 행사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또는 특정행위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없다고 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대체의사결정제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법 제10조의 내용이 한견후견개시에 관한 민법 제13조의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2. 피성년후견인과 당연퇴직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사건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최대 2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직권면직 절차를 통하여 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에 의할 경우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조직이나 시간 등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무담임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한하여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극복하여 후견이 종료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에서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처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위헌결정을 하였음에도 정부 부처조차 위 결정을 가능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 조항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성년후견을 회피하기 위한 대체적 지원 수단의 도입

발제문에 따르면 개정된 독일 민법은 법원에 의한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타방 배우자에게 6개월 기한 부 의료요양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위하여 검사, 치료행위, 의료적 침습과 관련한 일정 법률행위, 즉 그러한 행위나 자유박탈적 조치에 대한 동의, 치료 계약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가족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와 의료비 인출 등 법률행위를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도 뇌출혈로 쓰러진 교수님의 배우자가 의료비 청구를 하니 보험회사가 배우자에게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아오라고 했고, 성년후견개시가 되면 당연퇴직사유라는 것을 모르고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배우자 등에게 특정 기간과 특정 범위를 정해서 성년후견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성년후견인의 의무

발제문에 기재된 의사결정지원인의 행위의무 내지 주의의무[1]를 성년후견인의 의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을 후견인에게 예속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일본제국주의 침탈에 신음하던 조선이 떠오릅니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보호한다면서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어 지배하였습니다. 본인이 생명이나 신체, 거주하는 주택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가 후견인 입장에서는 최선이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나 희망을 최대한 지지하는 후견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는 입법개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맞는 입법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개정하고 도입한다면 결국 협약 제12조의 취지가 구현된 후견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존중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방안 모색

이 기 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말합니다. 나이와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 자신들의 가치관, 욕구, 선호도 등에 따라 삶

1) 의사결정지원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갖는다. 즉, ① 후견인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먼저 의사결정능력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력을 다하지 않는 한 법정대리에 의한 결정 권한의 행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②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야 비로소 법정대리가 허용될 수 있다. 나아가 법정대리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실제 또는 추정된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할 법적 의무가 있다. ③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합리적 관점에서 평가된 본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이나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best interpretation)에 따라 대리권 등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침들이 준수된 경우에만 법정대리는 의사결정지원 수단으로서 적법한 권한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모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발제 내용에서 공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존중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존중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서비스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서비스 제공 시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의료, 재산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본인의 가치와 욕구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 의사, 선호 등을 고려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의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들의 의사결정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후견계약 등)하여 가족 및 의료인[2] 등에게 공유하여 응급상황이나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최선의 해석(best interpretation)이 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시 성년후견인 등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대체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의 권리, 의사, 선호 등을 보장하고 존중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성년후견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능력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노인의 의사와 선호가 존중되도록 모든과정에서의 안전장치 마련(후견인의 엄격한 검증, 법적 절차와 감독, 후견인의 교육과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발표자료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노인이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비 자발적 또는 동의 없는 치료, 요양, 병원 또는 시설 입소(입원) 등에 관하여 노인 본인의 자기결정이 아닌 보호자에 의한 대체 의사결정 혹은 가족 편의의 결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3]

이와 같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비자발적 또는 동의없는 입소 등은 노인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후견 대체 수단으로서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제도 등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재산관리 관련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면서 미국 등 우리나라 보다 노인학대 문제를 경험하거나 담론이 형성된 국가에서는 경제적 학대가 증가 하고있으며 이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4]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부모 재산에 대해 공동의 재산이고 자식으로

2)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노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으며, 시설 입소 시에도 대부분 보호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4) 경제적 학대 기초연구 보고서(2019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내부 보고서)

서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5] 이에 따른 가족 간 재산 다툼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발생[6]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개별 욕구와 희망에 맞게 안정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민간을 통한 재산관리 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권익 보호장치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권리 옹호를 위한 대리인(임의후견제도, 지속적 대리권 제도 등)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19)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독거노인이자 자녀 등의 왕래가 없는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재산 관리가 필요해져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어르신의 돌봄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이 해당 어르신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 어르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및 감독 권한을 확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및 시설 등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상생활지원[7](생필품 구입, 공과금 대납, 통장관리 서비스 등)을 위한 제도 및 일본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권 등에서 운영 중인 유언신탁, 유언대용 신탁 등의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는 자산관리 지원, 사후에는 상속에 대한 설계를 통해 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여 가족의 분쟁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들이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탁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지 않지만 노인 재산관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발표 자료에서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8] 등을 참고하여 공공부문 주도의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존중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노인이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우선 선택 · 결정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며,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성년후견제도 및 후견대체수단 등 의사결정 지원 제도 개발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 수단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년후견제도 및 의사결정지원 제도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후견서비스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의 의사결정지원 제도 인식개선과 변화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동반적인 서비스 발전과 후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노인 존중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제도로서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노재현, 신용석, 원도연(2017) 한국 노인들의 유산상속 동기는 무엇인가: 자산이 유산상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 만족도, 정서적 지지의 조건부 과정 분석.(보건사회연구)

6)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제적 학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20년~'21년)

7) 일본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이용지원, 금전관리, 서류 등 주요 문서 보관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8)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토론문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이 아니라 '희망과 선호'(will and preference)라는 점에서 발표자의 주된 논지에 깊이 공감하며, 약간의 제언을 덧붙이는 것으로 과문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2.

(1) 현행 민사소송법(이하 '민소')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피한정후견인 역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는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55조).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소송행위를 대신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행위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으며(민소 제62조), 심지어 제한적 행위능력자가 아닌 경우(특히 피특정후견인이나 후견계약의 본인)라도 그에게 의사능력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이 그를 대리하게 됩니다(민소 제62조의2).

(2) 제한적 행위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해 그나마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2022. 11. 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8조 역시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원고로서의 소 제기와 제1심 소송행위 · 항소 · 항고에 대해서만 소송능력을 인정할 뿐입니다. 가사비송사건에 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비송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재산약정 · 상속 · 유언 · 양육비 · 재산분할 등 재산과 관계된 사건이라면 제한적 행위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안 제50조).

(3) 이와 같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들이 타인(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에 의존해서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가 충돌할 때 그들의 의사를 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민법은 이미 법정대리인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민법 제13조),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민법 제949조의2 제3항),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민법 제950조 제2항)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이러한 허가나 재판을 청구할 소송법적 능력을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대체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그 연쇄성과 불가역성에 따른 손실의 공포가 과장되어 있어 실무상 제한적 행위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위해 다소간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후견적 관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1호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소송능력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para. 38.), 그에 따른 각종의 부작용은 재판의 이른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통한 지원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법적 행위능력뿐만 아니라, 절차법적 소송능력에 관해서도 '대체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지원' 제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3.

(1)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존중하면서도(민법 제947조의2), 어찌된 일인지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약혼 · 혼인 또는 이혼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802조, 제808조 및 제835조), 인지 · 입양 · 협의상 파양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56조, 제873조 및 제902조). 심지어 판례는 후견인(내지 특별대리인)이 제한적 행위능력자를 대리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2)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이들이 사실상 혼인 · 이혼 또는 입양 등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성년후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그 관계를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정작 본인의 보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법정대리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유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피성년후견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그의 가족관계의 해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3) 재산법상 법률행위에 관해 기존의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의사결정지원'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의 시행 준비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피성년후견인의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관해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가능한데, 가정법원의 직권탐지주의와 후견적 개입에 의해 충분히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들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4.

(1) 발표자께서는 '의사결정지원' 제도로의 전환 방안과 관련해 비공식적 지원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이 의사결정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른바 '법정 의사결정지원인' 제도라는 공식적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는 결국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그 역할을 담당할만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기존의 후견 제도와의 경계선 또한 선명하지 않아 실무 일선에서 법정 의사결정지원인의 역할과 기능, 책임 등에 관해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2) 물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비위와 학대 등을 반추해 보면, 국가가 의사결정지원 과정에 개입 내지 감독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이 제도를 공식화하여 '법정 의사결정지원인'이라는 제도를 두는 것이 다소간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이 갖는 순기능(즉 가까운 친족 · 친구 · 이웃 · 지역공동체 내지 종교단체 등의 선의와 열정에 기초한 자발적 조력)을 고려해 보면, 국가의 엄정한 감독 하에 맺어지는 공식적 · 장기적 관계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과 그 주변인 간의 신뢰의 정도에 기초한 유연한 관계를 존중하되, 그 비공식적인 신뢰관계가 와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력해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1호 역시 의사결정지원장치는 '공식적 지원체계'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 지원체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자의 예로 동료지원 내지 또래지원(peer support), 옹호인(advocate) 제도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para.17). 정신장애인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그의 일상생활을 조력하고 있는 동료(peer)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 업무를 국가가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고, 그러한 동료를 갖지 못한 정신장애인을 위해 전문적인 '동료지원 활동가' 내지 '동료지원 전문가'(peer support worker/specialist)를 매칭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 밖에 (1) 정신장애인의 법률행위에 관해 취소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의 의사무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무효와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무효가 아닌 법률행위에 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범주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객관적 범주 획정 시 취소권 행사 허용에 따른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낙인으로부터 정신장애인 본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2) 법정대리인에게 동의권 및 취소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의 대체의사결정 제도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법정대리인이 표의자의 자연적 의사에 반해 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면 처음부터 취소재판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지,

(3) 신탁계약 등 후견대체수단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제약의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 실무적 관점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용한 제안을 해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부족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정 혜 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후견인에 의한 대체의사결정 대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피후견인의 사정상 후견인에 의한 대체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피후견인의 복리에 관한 객관적 판단(best interest)이 아닌 피후견인의 실제 또는 과거에 표명되었던 의사 또는 선호를 고려한 최선의 해석(best interpretation)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교수님의 의견에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지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다소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 잔존능력을 반영한 이상적인 성년후견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후견개시단계에서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 잔존 능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 잔존 능력 등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저희가 법정에서 만나는 피후견인들은 대부분 인지 장애의 상태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기능 장애까지 동반되어 와상 상태로 기도삽관이나 비위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후견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비공식적 지원네트워크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상태가 자신 명의의 예금인출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등이 가능한 정도일 때에는 자녀들이 피후견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처리하다가 피후견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함께 다닐 수 없거나 함께 다니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의사소통상의 장애가 현저히 드러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에야 비로소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나 선호를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지 장애가 위의 경우보다는 덜 진행되어 일정 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도 후견개시를 위한 심리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에서 후견개시업무에 관여하는 전문조사관은 두 명에 불과한 반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접수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의 접수 건수는 1,239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통계는 서울가정법원 내부 자

료로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견개시 사건 중 개시 여부 또는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일부의 사건에 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성년후견 사건은 전 사건 모두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한정후견사건도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무상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및 잔존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신감정절차를 진행할 기관도 많이 부족합니다. 후견을 개시할 시점에서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유무 및 정도, 잔존 능력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대면 방식의 정신감정이 필수적인데, 정신감정을 촉탁할 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청구인과 관계인 사이에 후견개시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대면 방식의 정신감정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견협의회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측에 정신감정을 촉탁할 기관 발굴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후견감독 과정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할 필요는 후견개시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후견감독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후견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후견인을 선임하였지만, 실제로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나 이익을 반영하여 후견업무를 처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후견인을 교육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후견감독절차의 체계를 마련하였고, 전수 조사를 거쳐 후견이 개시되어 종료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에서는 현재 18명의 감독관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및 미성년후견의 감독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에 후견이 개시되어 직권으로 개시된 감독사건만 951건에 이르고 작년말 기준으로 감독하고 있는 후견사건은 4,213건에 이릅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부동산 매각 등 재산처분행위, 소송행위, 피후견인의 치료를 위한 격리 등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후견기타사건은 작년 한 해에만 1,325건이 접수되어 후견개시사건 접수 건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견인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1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감독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변동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개시된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난 사건의 경우 절차구조비용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선 신상심층감독위원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을 방문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족하나마 인적, 물적 조직이 갖추어진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에 한하는 것이고, 지방의 가정법원에서는 이 정도의 감독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후견개시 및 후견감독 실무를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법원의 고충을 알아주십사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원의 고충까지 알아 주셔서 전문적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만,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잔존 능력의 활용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 잔존 능력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 작업이 선행될 때에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행 민법상 규정된 성년후견제도 체계에서든 추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반영하여 민법이 개정된다면 마련될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체계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후견실무에 비추어 볼 때,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 잔존 능력에 대한 조사와 진단이 현재보다 앞당겨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에서 만나는 피후견인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부족함에도 현재 후견업무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장애에 대비하여 너무 늦지 않게 미리 자

신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의후견제도. 신탁계약, 연명의료의향서제도, 의료요양에 관한 사전지시서제도 등)를 완비하고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가 주로 후견제도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집중되었다면, 후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제는 미리 노년을 대비하여 의사를 표시하여 둘 필요성이나 임의후견제도 등에 관한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 있음에도 피후견인의 신상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활용이 미비한 특정후견제도를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나 선호, 잔존 능력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지 장애인의 진정하고도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소통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주변인에 의하여 의사가 왜곡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견 개시 단계에서 후견인의 취소권, 대리권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후견 개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후견유형 또는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을 종료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조건으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선호, 잔존 능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 장애인의 의사와 선호, 잔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관한 보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무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적 인력의 규모, 그 확보를 위한 예산의 규모, 인력과 예산 마련을 위한 방법, 효과적인 조사 방법, 후견 개시 또는 감독 단계에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를 얼마나,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피후견인의 취소권이나 대리권의 범위를 얼마나 개별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 독일의 성년후견조직법상 규정된 사회조사보고서에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추가된다면, 성년후견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작업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방선영,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대학생 자원봉사

고원진, 권수민, 김가영, 김기윤, 김민주, 김상은, 김선욱, 김유진, 김정민, 김지오, 김지운, 나단비, 남현주, 류채현, 박인아, 박진희, 박태희, 서유진, 서정훈, 성은별, 신연우, 신영혜, 오정민, 원지수, 이다연, 이다이, 이소운, 이승영, 이양현, 이영호, 이유정, 이은세, 이지민, 이지민2, 이현아, 이혜원, 임수빈, 임현지, 장주원, 장지수, 전혜미, 정다원, 정의헌, 정재은, 최문경, 최신양, 최준영, 최하연, 하유지, 한아름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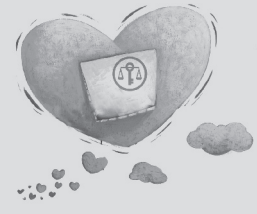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특별기획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7)

알코올 남용의 특징

내성, 금단증상, 강박적 음주가 없습니다. 이는 의존과의 차이점입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사용해서 심각한 부정적 결과들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절제를 잘하다가도 술을 한번 입에 대면 흔히 폭음이나 과음으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술집에서 싸움, 시비걸기, 직장결근, 업무수행의 부실, 결혼생활의 불화, 부모로서의 책임감회피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음주를 즐기는 시기는 흔히 주말에, 간격이 짧다면 퇴근 이후입니다. 진탕 즐길 때는 부정적 결과가, 조절하거나 아예 끊을 때는 평화로운 시기가 반복됩니다.

알코올 의존의 특징

- 내성(tolerance) : 술을 반복적으로 마셨을 때 그 효과가 점점 감소되거나 또는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셔야 같은 효과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s) : 음주를 멈추거나 줄였을 때 신체적, 정신적 갈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신체적, 정신적 의존)를 말합니다.
- 강박적 사용(obsessive-compulsive use) : 음주가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것(행동적 의존)을 말합니다. 강박적 음주 후에는 일시적으로 즐거움뿐만 아니라 긴장과 감정적 불편이 해소되거나 줄어드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심리적 의존).

→ 알코올 의존 상태는 더 이상 자신이 술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자신을 조정하기 때문에 음주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고 술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강박적으로 계속 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알코올 중독은 친밀하고 밀접한 가족관계에 해를 끼치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례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법의 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로써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시리즈의 하나로 2006년부터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상담소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음주문제상담을 일반인들에게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며, 알코올 중독자만큼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기능과 역할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병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 이혼, 별거, 유기, 가출, 빈곤, 가정폭력, 만성질병, 실직, 사회적 고립 등 상황적 문제와 잦은 좌절, 낮은 자존감, 의존성, 불안, 우울, 미성숙, 충동성의 심리적 문제 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병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없다면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

1)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변화를 가져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전에 수행하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떠맡아서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아내가 생계를 떠맡게 되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자녀들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습니다.

가족들은 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우며 체념에 대한 슬픔과 분노 등을 느낍니다.

3) 제한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워 집밖에서의 활동과 대인관계가 매우 제한되고 점차 사회생활로부터 소외되어가기 시작합니다.

4)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사는데만 돈을 쓰며, 술 문제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됨으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5) 알코올 중독자를 가족 스스로 치료하려고 시도합니다.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요하거나, 술병을 던져버리거나 감추며 돈을 주지 않거나, 울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달래고 잔소리해보며 술을 끊도록 해보지만 이런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계속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절망감은 더해 가는 것입니다.

6) 알코올 중독자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줍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신에게 술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변명을 해주고 책임을 대신하여 준다면 이 병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 이해부족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시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보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다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신 후의 결과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되며, 결국 이러한 동정과 돌봐주는 관심이 병을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예방지침서 ② 음주문제예방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에서

마침내 이룬 호주제 폐지 (3)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소, 전국적인 호주제 폐지 홍보
11월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16대 국회에 제출
2004년 6월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17대 국회에 제출
2005년 2월 3일	상담소가 주도한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월 2일	주도적인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3월 18일	호주제 폐지 축하연

50년 가족법 개정운동의 결실 – 호주제 폐지 축하연

‘평등사회 원년의 지평을 열며’

마침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온 가운데 얻게 된 커다란 결실이었다. 이에 2000년 9월부터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펼쳐온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이하 호폐연)는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본 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등 호폐연 간사단체 및 민주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으로 3월 18일 세종홀 대연회장에서 '호주제 폐지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축하연은 법무부, 여성부, 여성신문, 우먼타임스, IF, 미즈엔,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했다.

이날 축하연은 1부 축하식과 2부 여성부 장관 주최 만찬으로 이루어졌다. 1부 축하식에서는 오프닝 공연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씀, 윤후정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사)과 김주수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애실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축하말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하 퍼포먼스 그리고 축하공연이 있었다. 2부 만찬에서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인사말씀 및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의 건배 제의가 있었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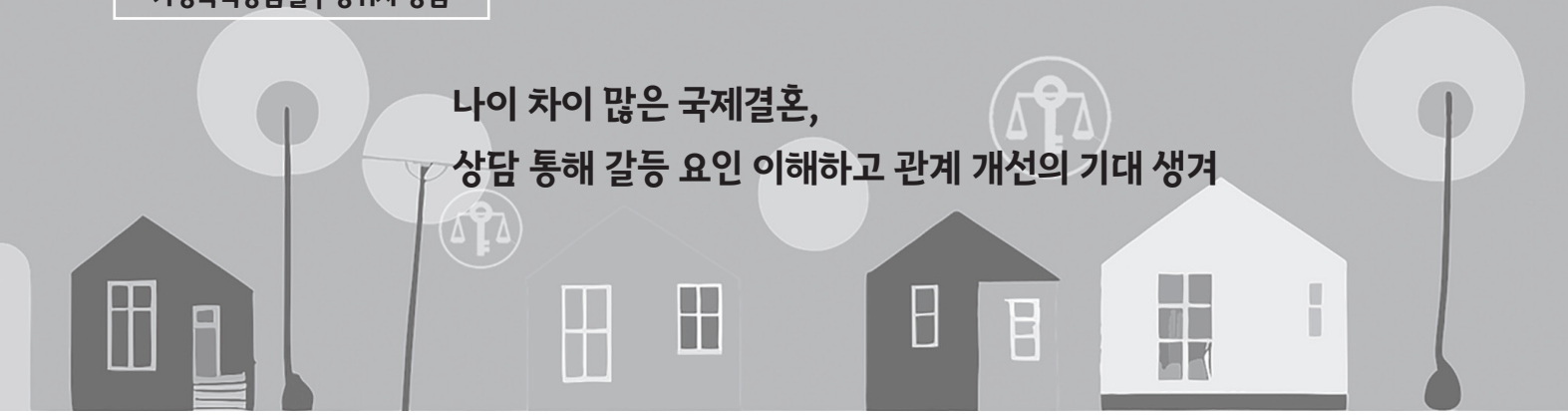

나이 차이 많은 국제결혼, 상담 통해 갈등 요인 이해하고 관계 개선의 기대 생겨

2020버 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1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집단상담 4회(비대면 진행),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부부상담 5회 등 19회

상담기간

2021. 1. 18. ~ 2021. 9. 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지 8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남(8세, 4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0. 4. 사건당일 자녀 병원 진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고 폭력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폭력을 인정하고 갈등의 원인을 남 탓 특히 아내 탓으로 전가하지 않기를 바랐다. 부부상담을 권유하자 행위자 상담이 진행된 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부부는 결혼식 전 피해자가 임신하여 결혼식 날을 앞당겼는데 결국 유산을 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가하며 갈등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힘들게 느껴졌지만 의리로 결혼을 진행하였는데 신혼여행을 갈 때부터 다투었다. 행위자는 갈등요인으로 자신은 자상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피해자는 폭언, 폭행을 하고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점을 꼽았다.

행위자는 상담 중 이전 보다 참으려 노력하고, 가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주말에는 아이들을 거의 전적으로 돌보았다고 하였다.

중간 점검시 피해자는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경우는 없었다고 하고,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 않은 점을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는 0점, 현재는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부상담에 동의하였다.

이어진 부부상담에서 부부는 그동안 서로 공격하는 말을 반복하여 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상화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결혼 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어떠한 이벤트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이었다. 주말에 행위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과 달리 내버려 두었지만 행위자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담 중 행위자에 대한 불평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라며 멈추는,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학력 및 직장(늦은 귀가)에 대한 피해자의 불

만과 시가 식구들에 대한 무시 등을 참기 힘들다고 하였다. 부부는 완전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불화요인이 내재된 상태에서 상담을 종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강하여 추후 부부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기에 상담 중 다루었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 1***폭행 / 2020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5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부부상담 7회 등 17회

상담기간

2021. 2. 9. ~ 2021. 9. 3.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1년 9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남(2세)이 있다. 남편은 재혼이며, 전혼자녀 1남 1녀(25세, 18세)가 있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결혼으로 한국에 왔는데 베트남인과 혼인신고하지 않고 낳은 1녀(3세)가 베트남에 있다.

2020년 5월 사건당일 아내는 태블릿PC에서 남편이 베트남 여성과 채팅한 것을 보고 언쟁하다가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가격, 태블릿PC와 결혼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지고 결혼사진을 잘라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남편은 아내를 눕혀 손으로 뺨을 때리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부부 상호간 폭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각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남편은 베트남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아내는 결혼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하였으나 아주 기본적인 한국어만 구사하여 부부사이에 소통이 잘되지 않았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고(아내 1회, 남편 2회 신고) 처분은 처음이었다. 본 사건 발생후 아내는 자녀와 함께 외국인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는데 3개월 경과후 연락이 와서 남편이 만날 수 있었고, 2020. 12. 중순 경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의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하는 통역상담원을 다누리콜센터에서 지원받아 부부상담을 진행하였다. 부부는 나이차이(21살)에서 오는 발달 단계의 차이와 남편의 다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및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식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의 극복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변화 탐색을 위한 개입으로 남편이 원가족으로 인한 분노를 인정한 것은 좋은 변화였지만, 여성과 페이스북 친구를 하는 것을 외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아내 행동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부부는 서로 필요에 의해 결혼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랑이 있는 부부관계를 만들고 싶은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부관계에 매우 강점으로 영향을 미쳐 향후 부부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남편은 사건 당시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상담종결시에는 부부관계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8점이라고 평가하고, 화가 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타임아웃을 한 후 화가 풀리면 대화하게 된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고, 향후 노력할 점으로 지속적인 감정조절과 부부간 호칭 문제 등 말조심을 꼽았다. 아내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 만족도는 0점, 상담종결시는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평가하고, 남편이 화를 내면 언쟁을 삼가고 화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피하였다고 하였으며 남편을 신뢰하게 되었다. 부부는 향후 노력을 다짐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2*** 폭행 / 2020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3회(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3회
부부상담 8회 등 20회

상담기간

2021. 2. 26. ~ 2021. 8. 31.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5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2020년 10월 사건당일 추석명절에 시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는 식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입닥쳐'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하다가 흉기를 바닥에 던지고 남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뺨을 3, 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남편은 이에 대항하여 아내의 뺨을 수회 때리고 왼쪽 팔목을 비튼 후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부부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쌍방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결혼으로 이주했는데 한국어에 서투르고 남편 역시 베트남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여 부부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다누리콜센터의 통역상담원 지원을 받아 부부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내는 갈등요인으로 시부모가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것, 남편 왼쪽 눈의 시각장애와 난임, 경제적 문제 등을 꼽았고, 남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결혼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편은 결혼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내가 불만으로 여기고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부부는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합의사항을 정하였는데, 아내는 지난 일을 수용하고 향후 불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남편은 감정 조절 잘하기를 실천과제로 정하였다.

아내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0점, 상담종결시는 1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였다. 폭력이 재발되지 않은 점을 평가하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여전히 자신에게 '미웁다'고 말하는 등 불만이 많은 점을 문제점으로 하소연하면서도 사건 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점, 상담종결시는 6~7점이라고 평가하였는데,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 충돌이 줄었고 부부가 서로 인내하는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부부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편도 아내 모국어를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감정조절과 함께 아내를 보듬는 마음과 태도 등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⑱

●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 문 68 | 작년에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 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피하기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1]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2]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3).
4.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

1)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2)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를 만나 볼 권리가 있다

Q 문 69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아이들을 남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단 이혼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맡은 이상 아이들과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기르지 않으면 만나 볼 수도 없나요?

A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3]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2 제3항).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Q 문 70 | 저는 고등학생인데 부모님께서 오래 전에 이혼해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이후에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저는 늘 아버지가 그립고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제게 없는지요?

A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우리 민법에서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Q 문 71 | 5년 전 아들이 이혼하면서 전 며느리가 손주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데려와 같이 지내는 낙으로 살았는데, 아들이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로는 손주를 볼 길이 없습니다.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지요?

A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에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신청에 필요한 서류 : 면접교섭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자녀),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판결문 또는 이혼 시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 위자료액의 산정 기준

Q 문 72 |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부모님이 지어 준 제 이름이 너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고 발음이 어려워 친구들이 제 이름을 다시 물어보곤 합니다. 읽고 쓰고 알아듣기 편한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은 귀하(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2조).

그리고 진기한 이름이라든가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운 이름,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또는 읽거나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름 등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의 경우에도 그 상당성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해 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44조 제3항),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가족관계등록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별표1, 별표2).

복미영 상담위원

감염병을 바라보는 의료인문학의 시선

김민정 민유기 박성호
윤은경 이동헌 이은영
이향아 정세권 지음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22(2쇄)

다행히 비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막바지에 덜컥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7일을 통보받고 막막한 느낌이었지만 다행히 해야 할 일은 거의 정리된 상태고, 집에만 있어야 하지만 OTT 서비스도 여러 개, 읽을 책도 여러 권 있었다. 발열도 없고 약간의 잔기침과 무기력증 정도여서 견딜 만하다고 일단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무기력함은 의외의 복병이어서 무심한 텔레비전 시청 말고 주의력이 필요한 책 읽기는 힘들었다. 다시 한번 읽어야지 생각했던 만화책도 들춰보지 못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 사회의 상수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의료적 대응과 더불어, 인문학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인류 역사상 다양하게 전개된 감염병의 양상들과 그에 대처해 온 고금, 동서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는 이 책 『감염병을 바라보는 의료인문학의 시선』은 막바지에 결국 합류하게 된 코로나19 경험자로서 의미 있는 독서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 스페인 독감에 대한 언급과 비교가 많았다. 다만 오늘의 이 팬데믹은 전 인류가 더 밀접한 접촉이 가능해진 오늘날의 세계사이기에 더욱 문제가 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이 책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경험을 구축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며,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 대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책은 1부 「감염병 대응의 역사」에서는 20세기 전환기 파리의 결핵 퇴치에 관해 당대의 의학적 연구와 결핵퇴치운동, 그 운동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조선시대에 이른바 '역병'이라 부르던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떤 대응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심리가 과거와 현대를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준 조선시대의 방역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발진티푸스 유행과 미국의 참전 및 참호열 연구 등 과거 인류사에 등장한 다양한 감염병에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시사하는 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2부 「감염병이 남긴 과제」에서는 '구조적인 하나의 건강'이라는 개념, 팬데믹 시대와 좀비 서사를 주제로 인간과 바이러스의 동일시를 통한 혐오와 배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본 원헬스(One Health)'에서 인간, 동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이들 모두의 최적 건강을 추구하는 '원헬스' 개념이 특히 흥미로웠다.

이 책은 경희대학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의 구성원들이 저자로 참여하였으며 이 연구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중심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통합의료인문학의 구축과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연구와 실천을 진행하며, 의료인문학 지식의 대중화와 지역사회의 인문학 발전에 힘쓰는 것을 지향으로 삼는다고 한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는 요즘도 다양한 종류의 음모론이 여전한 것을 보면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호랑이 머리뼈로 베개를 만들어 쓰거나 붉은색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글씨를 써 출입문에 붙이던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그리 멀리 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숙현 편집부장

곽배희 소장, 이원석 검찰총장 초청으로 대검찰청 방문

곽배희 소장은 지난 6월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초청으로 대검찰청을 방문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 초청 오찬 및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당일 행사는 대검찰청의 여성 및 아동정책에 관한 브리핑과 질의 · 응답이 있었다.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곽배희 소장은 검찰의 다양한 정책과 상담소의 역할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으며, 민법상 검사가 청구권자로 되어 있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검찰과 상담소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대검찰청에서 박성민 형사선임연구관, 황병주 형사부장, 원신혜 형사4과장 등이 배석하였고,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대검찰청 공판2과장 등 본소 실무 방문

6월 29일 대검찰청 김상민 공판2과장과 박찬영 검사 등이 상담소를 방문하여 본소 곽배희 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면담에 이은 후속조처로 본소 법률구조 담당자들과 공익대표소송 실무자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실무자협의회는 곽배희 소장과의 차담회에 이어 검사의 공익대표활동과 관련하여 검찰과 본소와의 업무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으로 이루어졌다.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박슬기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6월22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관계에서의 상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부부'가 가장 크고 장기간에 걸쳐 행복을 줄 수 있는 관계이며 동시에 갈등이 있으면 해결되기 전까지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관계라고 하였다. 덧붙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7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곽배희 소장, 호암상 시상식 참석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6월 1일 호암재단 주최로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3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6.12. 강서지역자활센터- 생활법률교육
김진영 상담위원

6.23. 다문화가족 가족법 교육 - 구리시가족센터
김진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장상담**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 26일 부성주의 원칙 규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이 주최하는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가족법 강의에 참석하였다. 27일 출생등록제와 친생추정조항 등과 관련하여 한겨레21과 인터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15일에 서울가정법원 1조정부의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9일과 23일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의 손해배상 및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2일과 19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역량강화교육(친족상속법 법률강의)에 참석하였다.

2023년 6월 상담통계

총 건수 4,577				
법률상담 (3,632)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969	2,524	136	2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848	51		46	

• 인터넷 정보 이용 80,721 건

2023년 6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577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632건(79.4%), 화해조정 848건(18.5%), 소장 등 서류작성 51건(1.1%), 소송구조 46건(1.0%)이었다.

법률상담 3,63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3년 5월에 비해 남녀관계(0.3%→0.4%), 부부갈등(5.2%→5.5%), 이혼(21.3%→22.7%), 친권·양육권(3.8%→3.9%), 양육비(7.7%→8.2%), 유언·상속(6.7%→7.4%), 친양자(0.4%→0.5%), 성변경(0.9%→1.2%), 성년후견(2.4%→2.5%), 임대차(0.2%→0.4%), 채권·채무(0.2%→0.4%), 파산(1.8% →2.4%), 개인회생(0.3%→0.4%), 형사기타(0.6%→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63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69건(26.7%), 전화상담 2,524건(69.5%), 인터넷상담 136건(3.7%), 서신상담 2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3년 월별 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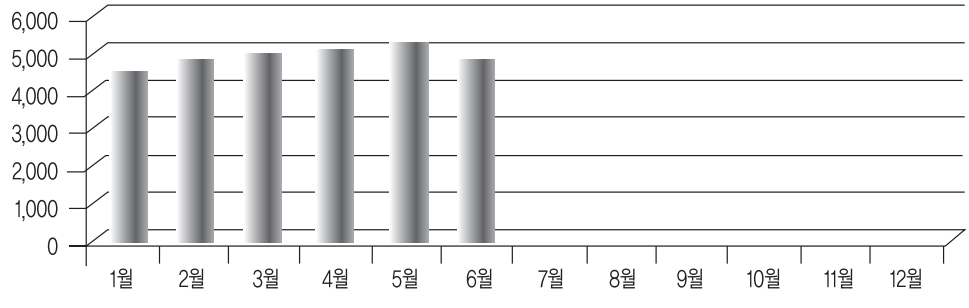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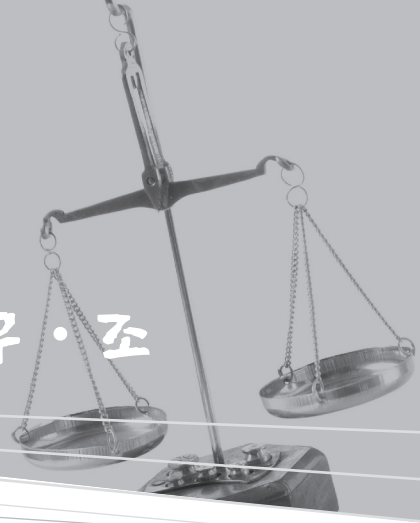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과
원고 가족에 대한 모욕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1-1-14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친권자지정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4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1명(남, 3세)을 두었다. 평소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해서 지나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원고의 부모와 자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부모 앞에서 원고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더 이상 피고의 폭력을 견디기 어려워진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과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3. 3. 3.)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0.부터 2023. 3.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2023. 3. 1.부터 이 법원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2022면접000호 면접교섭 회기 종료시까지: 위 면접교섭 사건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 실시

나. 위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면접교섭 회기 종료 이후

1) 일정

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까지: 매월 2, 4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7:00까지

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월 2, 4째 주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17:00까지

2) 인도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오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준다.

3) 협조의무 등

가) 원고와 피고는 위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리고, 서로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에 무책임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22-1-18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2005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20대)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와 부양의 책임 해태를 사유로 2014년 9월 재판상 이혼하였다. 당시 이혼 외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해 결정한 바 있으나 상대가 가출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까닭에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이후 여전히 상대방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청구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혼자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했다.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지속되자 청구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8,1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3. 1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197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37세에 위암 수술을 하였다.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다녔는데, 배우자는 신청인의 속도 모르고 과도하게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그러면서 채무가 증대되었고, 신청인은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대게 되었다.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생계는 더욱 힘들어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다. 이후에도 직업 특성상 잦은 음주로 인해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고,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가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신청인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4. 24.)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감치

법률구조 2022-1-305

담당 : 이용락 변호사

사건명 : 이행의무위반(감치)

내용 : 신청인(남, 40대)과 피신청인(여, 30대)은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2세, 9세)을 두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미지급 양육비 1,400만 원을 지급하되, 14개월간 매월 말일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부 이행 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 4. 19.)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1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정한다.

게임중독, 잦은 가출과 외박, 채무 발생 등 무책임한 피고와의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2-1-38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3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 1명(여, 5세)이 있다. 피고는 잦은 가출 및 외박, 게임중독, 무책임한 채무 발생,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소홀 등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관계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기관에서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잦은 불참석으로 완료하지 못하였다. 2020. 4.경부터 피고의 가출로 별거 중이며, 2020. 10.경부터 원고가 알지 못하는 피고 명의의 채무 독촉장이 수차 송달되고, 결국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까지 진행되었다.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3.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23. 3.부터 2024. 6.까지: 월 2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총 16회

나. 2024. 7.부터 2027. 12.까지: 월 4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총 42회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가. 2023. 3.부터 2024. 6.까지 월 30만 원씩을,

나. 2024. 7.부터 2027. 12.까지 월 40만 원씩을,

다. 2028. 1.부터 2030. 12.까지 월 80만 원씩을,

라. 2031. 1.부터 2033. 12.까지는 월 85만 원씩을,

마. 2034. 1.부터 2036. 12.까지는 월 90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14:00까지

2) 매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사건본인의 생일, 입학식, 졸업식 등 사건본인의 행사가 있는 날: 구체적인 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함

3) 매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일: 구체적인 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함

나. 인도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는 방법

다.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고,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 등을 변경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 조정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코로나19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413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대)은 도소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도매시장 상인들이 물건값을 제때 주지 않아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미수금이 늘어나 결국 파산하였다. 이후 당구장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폐업하였고, 이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신청인의 형편으로는 막대한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심기일전의 마음가짐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달 약 40만 원씩 채무를 상환해나갔으며, 최근까지 약 70%의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였고, 집합금지와 자가격리 등의 정부지침으로 인해 학원생이 급격히 감소, 결국 학원을 폐업해야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협심증을 앓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건강상 이유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1,8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3. 4. 10.)

채무자를 면책한다.

혼자 힘으로 자녀를 5년간 양육해 온 비혼모의 인지 및 양육비 등 청구

법률구조 2021-1-316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청구의 소

내용 : 원고(여, 20대)는 피고(남, 20대)와 사귀다가 임신을 하였으나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출산하여 혼자 힘으로 자녀(남, 5세)를 키워왔다. 원고는 어머니의 간헐적인 도움으로 육아를 하며 직장을 다녔으나 월급이 적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 피고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오지도 않았다. 원고는 아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피고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 4. 19.)

1.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인 “이”와 본인 “전주”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3.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이하 생략)

무리한 투자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319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청구의 소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3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여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족불화를 일으켰다. 피고는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재개발 사업과 자동차 대부업 등 수차례에 걸친 투자를 하였으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경제갈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2016년부터 별거상태이고 원고는 피고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면책결정을 받아야 했다. 2020년 10월 경 원고는 피고가 자녀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또 다시 다단계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하 생략)

50년 가까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온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439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70대)는 피고(남, 80대)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50년 가까운 혼인생활 동안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기물파손 등을 가하였고, 수 명의 여성들과 외도를 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가 생활비와 교육비, 자녀들 병원비 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고, 생활비로 인한 채무로 원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원고는 이혼한 아들과 같이 살면서 그 자녀까지 양육하여야 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에 익숙한 아들은 피고처럼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여 원고는 노인학대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고는 지금부터라도 혼자 편히 살겠다는 심정으로 이혼을 위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23. 3.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하 생략)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3년 7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7월 10일, 7월 24일, 8월은 휴강, 9월 11일, 9월 25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023년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대면강의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7월 27일	공감능력
8월 24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1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6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3일	부부대화법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 · 혼자 힘으로 자녀를 5년간 양육해 온 비혼모의 인지 및 양육비 등 청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23년 8월 17일 ~ 19일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둥지교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5시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7월 12일	매사 불만족과 관계갈등을 초래하는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월 9일	시간이 흘러도 엷어지지 않는 고통, 트라우마	
9월 13일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분장애	
10월 11일	존재를 삼킨 타인의 시선, 불안장애	
11월 8일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충동, 불안조절장애	
12월 13일	갈망에서 시작된 절망, 중독장애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연수기간 : 2024년 1월 16일(화) ~18일(목), 1일 5시간, 3일간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연수대상 : 서울 · 전국 초 · 중 · 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 관련 법률/이혼관련 법률/부모 · 자녀 관련 법률/후견 관련 법률/상속 · 유언 · 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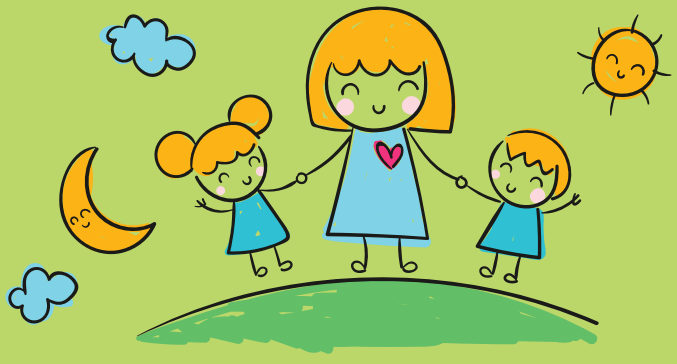

일 시 ▶
2023년 8월 17일~19일

대 상▶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